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 및 분포양상

이 정 임*

A study on the distribution basis and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Lee, Jeong Y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by providing the basic data about the distribution basis and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at are in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n p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ithout any nurse-teacher.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s about the history, 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health. The emphasis was set on the distribution basi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The school health of the world dates to the late 18th century in Europe where was free supplying with food for poor children. The school health of Korea originated from smallpox vaccination which was executed with appearance of modern schools in the late 19th century.
2. The related laws of school health began as a part of Education Law which was constituted in 1949. By the School Health Law constituted in 1967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chool Health made firm the legal basis of school health.
3.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school health 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enter and each Board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For the first time in 1979,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t about the same time of establishment of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health section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training in locality.

4. In the manpower of school health which was presented in the related statute of school health, there are the ward chief of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of cities and districts, the mayors, the governors of provinces, the school managers, the principals, the school doctors, the school pharmacists, and the nurse-teachers, including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s the practical manpower of school health.

5. In order to get some information on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additional school health, this study made up a questionnaire from August 3 to August 11, 198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2 teachers who took part in the yearly training for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from Kyunggi province, Chungbuk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ing :

1.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each Board of Education with schools are subject to, are as following : 70.1% (Kyunggi), 76.5% (Chungbuk), and 81.4% (Jeonbu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of 3 provinces are as following : 74.1% (Primary schools), 77.8% (Middle schools), 76.7% (High schools).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2.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chools :

There were 64.2 percent of primary schools and 35.8 percent of middle schools among 212 schools. 91.5 percent of schools were located in districts. Public schools formed 55.7% and then national schools were higher in percentage than private schools, 58.5 percent of schools had 1-9 classes, 64.6 percent of schools had 101-500 students, and 90 percents of schools had 1-20 teachers.

In considering student sex, the co-ed school showed the high distribution percentage (Primary schools : 100%, Middle schools : 81.6%).

3.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

93.3 percent of teachers were female, and more than 60 percent of teachers were 20-29 years old. As the age got higher, the percentage became lower.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In considering their educational status, 86.8 percent of teachers in primary schools were from teacher's colleges, and 64.5 percent of teachers in middle schools were from education colleges.

In considering teaching career, 46.7 percent of teachers had teaching career of less than 2 years. 73.6 percent of teachers had held additional school health for less than one year. More than 80 percent of teachers ha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ne time or twice. More than 70 percent of teachers had 1-2 additional jobs except for the school health business.

The motivation to hold additional school health is most caused by mandatory orde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0 percent. In considering interesting degree concerning school health, lukewarm answer is the highest of 62.7 percent, followed by affirmative answer of 23.6 percent. In considering their contentment degree respecti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discontent or very discontent" is the highest of 47.6 percent. As a discontent reason of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overwork is the highest factor of 37.9 percent.

Amo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the most difficult affair is nursing service to be 34.0 percent, followed by health education of 31.6 percent. It testify the need of professional. The source of knowledge about school health has been acquired from masscommunication or private health experience, which account for as much as 56.1 percent. It shows seriousness of lack of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necessity of school health experts, 95.8 percent represents absolute need.

With above consideration of study results, I propose as follows :

1.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unify and improve statute respecting current school health which has not been steadfastly supporting school health business by ambiguity of expression and dualization.
2.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give the school manager, school staffs and parents of students educational chance with which they can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chool health and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as set up alternative policy plan to be able to vitalize school health committee.
3. I propose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acticable to taking totally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back up and cooperate in an attempt by make school health better and desirable toward development by way of appointing qualified health teachers on the basis of legally regular teacher staff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세계는 산업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인간에게 안겨주었으며, 조직사회는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인간은 기계문명이 없으면 살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는 개방되고, 세계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가치의 혼란, 문화의 혼동, 인구의 폭증, 공해문제, 약물의 오용, 성도덕의 문란, 청소년 문제 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상호 복잡한 관련을 맺고 있어 건강의 개념이나 간호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요구 또한 크게 변화되어 오늘날

의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질병 중심의 양적 간호에서 인간중심의 질적간호와 전인 간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개념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간호분야에 속하는 학교보건사업 또한 시대적 요령에 의해 역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양경자, 1986)

우리나라의 학교 인구는 1987년 현재 11,852,376명으로 (문교부, 1987) 전 인구의 28%에 달하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6). 그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사회 및 국가적 입장에서 민주국민으로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학교 보건의 목적을 두고 있다. (김주성, 1976; 이수희, 1986). 학교보건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김주

성, 1976; 이수희, 1986). 학교 인구중에서도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인구는 전 인구의 27%(문교부, 1987)에 달하며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심신의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있는 인구층이다(박형중, 1973; 김명호, 1982; 김정근, 1989). 또한 학교는 학교 인구에 대한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의 지도에 있어 적이한 위치에 있고(김명호, 1982), 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 학교보건을 통해 지역사회보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학교인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본이 된다.(김운서, 1974; 국민보건연구원, 1977). 학교보건은 민족의 인구 자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김정근, 1989).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법상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바, 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건인발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라고 학동기 건강의 중요성을 명시하였고, 또 문교부 방침이나 학교보건법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문교법전, 1988; 김화중, 1984).

학교보건의 궁극목적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시킴에 있다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나, 학교보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김화중, 1984). 그러나 대체적으로 총괄하면 학교보건의 개념에는 보건 서어비스(Health Service), 보건교육(Health Education), 학교환경위생관리가 포함된다. (Oda, 1981; 김화중, 1984; American. S.H.A, 1978). 즉 학교보건은 지식과 기술의 투입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각종 보건 의료 전문가는 물론 다른 과학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Rosner(1967) 등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보건요원을 교의, 보건 간호사, 간호사, 보조원을 들고 있으며, 교장, 교직원, 재단, 행정가들도 학교보건 인력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Harlin, 1977). 또 학교보건의 보건팀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자, 보건교육자, 간호사, 사회사업가, 행정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Rustia, 1982), Harlin(1977)의 '학교보건팀 요원들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에서는 학교보건 활동의 대부분이 간호사의 역할이라는데 보건팀이 동의하고 있다(문희자의 3인, 1985).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1987년 현재 양호교사 충원율은 전국 초·중·고교의 27.5%에 불과한 실정으로(문교부, 1987) 문교부는 일반교사에게 보건관리에 대한 훈련 즉,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0일간의 양호겸직교사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양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600명씩, 1984년에는 약 1,000명에게 양호겸직교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박신애의 2인, 1985) 교사자신의 전문영역이 되고 있지 않아 역할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양호겸직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의 70% 이상에서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문요원인 일반교사가 양호겸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배치근거 및 분포양상을 연구함으로써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를 고찰한다.
 - (1) 학교보건의 역사를 고찰한다.
 - (2) 학교보건 관계법을 고찰한다.
 - (3) 학교보건 조직을 고찰한다.
 - (4) 학교보건 인력을 고찰한다.
- 2) 우리나라 양호겸직교사의 제특성에 따른 분포양상과 학교보건사업과의 관련을 분석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경기, 충북, 전북 지역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양호겸직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1988년 8월 3일부터 8월 11일에 걸쳐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례 양호겸직교사 연수교육에 참석한 24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목적 달성에 부합되도록

록 고안한 설문지를 연구기간중에 배부하여 응답토록 한 뒤 회수하였다. 이 중 28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한 2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응답율: 8.3%)

2) 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는 진신처리과정(SPSS)을 통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검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학교보건학이나 학교 간호학과 같은 실천과학은 그 시대, 그 사회의 학교보건 및 학교 간호를 조명하고 이끌어 나간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이론의 제시가 아니라, 그 때와 그 곳에 알맞는 지침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 그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점이다(김화중, 1984).

학교보건이나 학교간호에 관한 개념적인 이해는 그 실천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의 경험과 이론으로부터 도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학교보건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다만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학교보건이요 우리의 학교간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와 현황에 조명시켜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보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절차 및 법제와 조직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학교보건의 역사에 대해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법제, 기구, 사업, 인력에 관하여 그 역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삼으려 한다.

1. 학교보건의 역사적 고찰

유럽에서 학교보건사업의 기원은 1790년 Bavaria에서의 가난한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은 B.Thompson에 의해 New England까지 확산되었다. 그 후 1832년 E. Chadwick 은 빈민법(poor law)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아동의 건강을 위해 고용조건을 제한하도록 했다. 불란서에서는 1833년에 아동의 건강과 교사

의 위생에 관해 학교당국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했고, 1842년에 교의가 모든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분적이거나 학교신체검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박영수, 1988). 1874년엔 브렛셀과 벨지움에서 근대화 된 과학적인 신체검사가 시작되었다(김주성, 1974; 박영수, 1988). 1898년에 독일에서는 학교신체검사를 실시해 전염병 집단을 색출해 냈다(이선미, 1979). 미국에서는 1829년 W.A.Alcott에 의해 제출된 교사건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교의의 필요성과 아동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Horacemann은 1838년 Massachusetts 주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보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894년 Dr. Samuel Durgin이 처음으로 공립학교 아동의 건강 관찰제도를 만들었으며, 학생들의 디프테리아 방역 사업을 실시했다. 1897년 뉴욕시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질병관리를 위해 의무관(medical inspector)을 배치하여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검진하였고, 1902년에는 뉴욕시에 의하여 최초로 학교간호사를 배치하게 되었다(국립보건연구원, 1977).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는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에 공립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보건학, 학교보건학 등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학교급식은 1910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1913년에는 검역법에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서 학교가 아동의 건강관리를 책임진다고 하였다(김화중, 1984).

Oda(1981)에 의하면 학교간호는 1891년 영국에서 학교 당국자가 경증의 질병과 감염성 문제로 인해 학교시간을 상실하고 있는 아동들을 수업시간 동안 방문해 주도록 간호사에게 요청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02년 뉴욕시에 의한 학교의 간호사 채용을 학교간호의 시작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학교에서 실시한 중두법에서 학교보건의 기원을 찾는 견해가 있으며(이선미, 1979), 1930년 Canada에서 보건 간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금전에 의해 보건간호 강습회를 열고, 70여명의 요원을 배출하고 이 중 일부가 도시학교의 의무실에 근무하게 된 것을 현대적인 의미의 학교보건의 효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영수, 19

88).

193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그 시기는 1876년에서 1882년의 한·일 수호조약과 한·미 수호조약으로 시작된 문호개방과 구교육에서 신교육으로의 이행과 함께 근대학교의 출현,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격동기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의 자주적 근대화 과정은 크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학교보건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 과목으로 체조와 함께 박물 또는 이과를 두어서 생리와 위생교육을 하였으며(허정, 1980), 학교의와 양호교사를 운영한 실적도 보이지만 이 시기의 학교보건은 자주적인 것이 아니며 일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상적인 발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교육의 자주적인 발전이 시작되어 민주정신에 입각한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미군정하인 1964년 9월 1일에 새 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학교보건도 이러한 민주교육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CARE와 CAC 및 캐나다의 유니라리안 봉사대에서 제공되는 우유분을 이용한 결식아동급식이 학교보건 측면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사업이었다(서울시 교육위원회, 1980). 그리고 1950년 6·25동란으로 학교교육과 학교보건 모두 혼란에 빠졌고 전쟁의 종료 이후 진후 복구 과정에서 출발하여 1967년 법률 제1928호로 학교보건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학교보건의 법적준거를 갖게 되었다.

그 후 1982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학교급식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학교보건은 문교부와 체육부의 이원화 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사회, 1987).

2. 학교보건 관계법령의 고찰

건강의 개념이 변화되어 오면서 학교보건의 개념도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오늘날의 학교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학교보건 관계법령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본 연구의 목적인 현행 양호점교사 제도의 배치근거를 찾아보려 한다.

우선 학교보건 관계법령이라 하면 가장 먼저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을 들 수 있으며, 학교신체검사 규칙,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학교시설 축진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전염병 예방법, 결핵 예방법, 기생충 예방법, 학교급식법 등이 있으며, 1970년에 제정되어 1982년에 폐지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되어 1982년 3월 20일의 법률 제354호로 25차의 개정을 본 현행 '교육법'은 학교보건에 있어서 크게 세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에서의 보건과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교육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제2조에서 7개 항목의 교육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제1호에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건인 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고 했으며, 제94조, 제101조, 제105조에서의 각각 그 제7호, 제4호 및 제3호로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건 및 체육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학교보건의 전문인력의 배치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제79조에 교원(제73조)의 종별과 자격을 규정하였는데, 그 제1항에서 정교사,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 지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와 함께 양호교사를 교사의 일종으로 명시하면서 간호사를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신체검사와 양호실의 운영을 학교보건에 있어서 필수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제89조 제1항에서 '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 이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은 제38조, 제40조 제3항, 제43조 제3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양호교사의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법'이 제시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급학교의 교과(제 8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9조, 제160조의 제2항, 제164조)를 명시하고 있다.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 1928호로 공포되어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실제적인 장을 열게한 '학교보건법'은 1977년 7월 23일과, 1981년 2월 28일의 2차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제3조에서 보건관리를 위하여 양호실 등 보건시설 및 기구의 구비의무, 제7조에서 신체검사, 제10조에서 예방접종, 제9조에서 학생의 보건관리, 제13조에서 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5조에서 보건관리 전문인력으로 학교의(치과의 포함)와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제16조에서 시·도 및 시·군 단위의 학교보건관리 기구, 제17조에서 문교부의 학교보건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식품위생의 유지의무와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과 운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보건법'이 공포된 후 2년을 훨씬 넘어 1969년 12월 25일에야 대통령령 제4311호로 공포되었고, 1981년 10월 8일에 제3차 개정이 있었다. 이령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문교부에 두는 학교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제6조에서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체계상으로 '학교보건법'의 시행규칙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신체검사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원래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951년 3월 10일에 문교부령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상술한 '교육법' 제89조의 문교부령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241호로 한글화된 후로도 1979년 6월 25일까지 5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학교보건법'과는 명시적으로 연결이 없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전문개정된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에서 "신체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동법에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학교신체검사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체계화 하였다.

학교 신체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기건강진단 또는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다. 즉, '전염병 예방법'과 '결핵예방법' 및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학생 및 교직원의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과 기생충 감염 여부 검사 및 치료를 학교장의 의무

사항으로 하여 연1회 또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은 매학년 초에 결핵과 함께 나병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 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발생 신고와 예방접종등의 예방조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학교보건에 있어서의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에게 환기, 채광, 조명, 번소 등의 환경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제4조),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의 위생적 관리에 앞서서 우선 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그 목적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이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과 '학교 교구 설비에 관한 규칙'이다. 기준령의 내용중 특히 학교보건과 직결되는 것을 보면 양호실은 학교당 1실 이상으로 하되, 교장실, 사무실, 숙직실 등의 관리용실 등과 겸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그중 학생들의 영양에 관련된 특별법으로서 '학교급식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그 역사가 오래되며, 구호적성격에서 보건적성격으로 바뀐지도 오래이나 이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원래 '학교보건법'(제12조, 제18조)에 간단히 학교급식의 실시와 정부보조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었다가 그후 학교 급식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학교급식법'은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56호로 공포되었고, 그해 9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3월 20일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서 문교부 직제가 생기면서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었고, 1983년에 체육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학교보건에 관련된 여러 법령을 살펴보면, 학교보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은 역시 학교보건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부단한 검토와 정비가 요청된다.

이상에서 학교보건 관계법령을 고찰해 봄으로써 학교보건의 법령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이 가운데서 양호점직교사와 직접 관련지을 수 있는 학교보건 인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해 보면, 교육법 제79조에서는 교원의 종별과 자격을

규정하는 항목중 제1항에서, 양호교사를 교사의 일종으로 명시하면서, 간호사를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여 학교보건 전문인력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기는 하나, 교육법 시행령 제38조에서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서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촌에 있어서는 18학급 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했으며 제40조와 제43조의 각 3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에 관한 항목에서 “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제1항 및 2항의 정원의외에 이를 둘 수도 있다”라고 하여 양호교사를 정식교원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둘 수도 안 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학교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 및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고 하였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국민학교는 학교의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9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라고 하여 역시 ‘두어야 한다’는 의미보다 ‘둘 수도 안 둘 수도 있다’는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974년 문교부령 제226호로 제정되어 1982년 3월에 폐지된 ‘학교보건 관계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2조에 “각급 학교 보건관계 직원이라 함은 교직원 중 학교장, 체육(주임)교사, 양호교사, 학급담당교사와 학교의(치과의사 포함), 학교약사를 말한다”하여 체육교사와 학급담당 교사도 학교 보건인력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학교보건 관계법령의 어느 부분에도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양호겸직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나, 법률자체의 표현의 모호함은 학교행정자로 하여금 양호겸직교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본다.

양호교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양호겸직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건비가 많이드는 양호교사의 학급배치보다는 교원잡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인력, 즉 사무보조원을 늘려(김상옥, 1989) 응급처치도 하고 양호실도 관리하며 학교잡일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무지한 발상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호교사배치의 법적근거가 강제성을 띄우지 못하고 모호함으로 인해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학교보건 담당기구

학교보건사업은 책임당국의 방침에 따라 특수학교 보건과 일반학교 보건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명호, 1982).

첫째, 특수학교보건은 학교마다 특별한 교과과정을 마친 자격있는 양호교사를 두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건강교육을 전담하는 제도이다. 즉, 학교보건의 책임이 행정당국인 문교부에 있는 경우이다.

둘째, 일반학교보건은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양호교사를 두지 않고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학교보건을 담당케 하는 제도이다. 즉, 학교보건의 책임이 보건사회부에 있는 경우이다.

이 양제도는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어느제도를 택하는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및 자격있는 전문가의 충족도 등에 따른 정부의 방침결정에 따르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수학교보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보건을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학교보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학교보건 행정기관은 중앙의 문교부와 지방의 시·도 교육위원회이다. 따라서 이 두 기관에서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직제가 변천해온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발달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이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정부수립에 따라 1948년 11월 4일에 대통령령 제22호 공포에 의해 발족한 문교부는 문과국안에 체육과를 두어서 보건과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시켰다. 그 이전의 미 군정하에서는 교화국 체육과로 있었다. 학교보건에 관한 이 직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 바, 1961년 10월에 각령 제180호에 의거하여 체육과가 체육국으로 승격되면서 국민체육과와 함께 학교 체육과가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2년 후인 1963년 12월 각령 제1737호에 의거하여 다시 문에 체육국산하의 체육과로 계속되었다. 1968년 7월 대통령령 제3512호의 공포로 문에 체육국은 사회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교육국에 체육과를 두고 학교보건과 체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70년 학교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해 1월 26일 대통령령 제4535호의 공포로 보통교육국에 학교급식담당관을 두어 학교의 급식업무에 대하여 국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는 사회교육국의 체육과에서 그대로 담당하도록하여 보건업무를 보통교육국과 사회교육국에서 다루는 이중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그해 8월 대통령령 제5320호 공포에 의해 체육국이 지도감독, 양호교사 및 학교교의 수급계획과 지도감독, 학생보건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73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6531호에 따른 문교부 직제개편에서는 체육국안에 국민체육과와 학교체육과 및 학교급식과를 설치하여 일반 보건업무와 학교급식업무를 별도의 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1979년 3월 19일에는 대통령령 제9380호로 문교부의 체육국을 체육과, 학교보건과, 학교교류과로 개편하여 문교부 직제개편 이래 처음으로 학교보건을 전담하는 과가 생겼다.

지방의 학교보건행정은 시·도에서 관장하다가, 1964년 1월 1일부터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도 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처음에는 관리국 문정과에 체육계를 두었다가 1960년대 말에는 사회체육계로 되었다. 1973년에는 관리국에서 학무국 산하로 옮기면서 사회 체육과로 승격되었고 그 밑에 보건체육계를 두었다. 1979년을 전후하여 사회체육과의 보건체육계가 체육계와 보건계로 분리, 증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의 문교부 직제개편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보건과 체육의 구분 및 학교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반영과 정부의 인식을 명백히 하였고, 그동안 학교급식에 치우친 학교보건행정에

있어서 균형감각의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1960년대 말의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1970년대 말의 학교보건과의 설치는 미국이 1910년 체육과 학교위생을 구분한 점에 비해 60여년이 뒤지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학교보건에 있어 발전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보건 담당인력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행정책임자인 교장 등과 이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학교의, 학교약사의 및 양호교사가 우리나라 급제상의 학교보건 전문인력이며 그 중에서 간호사인 양호교사가 전문인력 가운데 유일한 교사이며, 학교의 상근자로서 학교보건사업의 필수 요원으로 핵심 전문요원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간호사에게 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양호교사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은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로 공포된 '교육공무원법'에서였으며 1956년에 문교부 장관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이 발행되었고, 1961년에 교사적인 양호교사로 발령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과 1976년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서 양호교사를 학교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사업에 가장 효율적인 인력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학교보건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학교보건담당자는 그 직무 내용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

- 1) 교육 구청장, 시·군 교육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선정의무(제5조), 전염병 예방과 학교보건을 위한 휴교명령(제14조).
- 2)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 의무(제6조).
- 3) 학교의 설립 경영자; 학교보건시설의 구비의무(제3조).
- 4) 학교의 장;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의무(제4조), 신체검사 실시의무(제7조),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의무(제9-13조), 등교 중지(제8조)와 휴교조치(제14조), 제1종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사망자)신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과 예방조치, 개방성 환자 취학 금지조치(‘전염병 예방법’ 및 ‘결핵 예방법’), 기생충 감염여부 검사 및 치료, 기생충 예방검사기관에의 가검물 송부(‘기생충 질환 예방법’), 기생충 감염여부 검사 및 치료, 기생충 예방검사기관에의 가검물 송부(‘기생충 질환 예방법’).

- 5) 학교의(치과의 포함), 학교약사, 양호교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 담당(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에 의한 학교의 또는 양호교사의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제14조의 2). 양호교사의 체격 검사 및 체력검사와 학교 촉탁의사와 체질검사 및 질병검사(‘학교신체 검사규칙’ 제3조 제1항).
- 6) 보건 사회부 장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수검명령(‘결핵 예방법’ 제5조) 등.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지역의 양호겸직교사 배치 양상

경기도는 평균 70.1%의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63.1%로 비교적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들에 비해 양호교사 충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충북은 평균 76.5%의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학교 70.9%, 고등학교 78.8%인데 비해, 중학교 93.5%로 충북의 다른 학교수준에 비해 그리고 경기도 중학교에 비해 볼 때 월등히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이 높게 나타났다(표-2).

전북은 81.4%의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을 보이므로서 경기와 충북지역에 비해 양호교사 충원이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 수준별로 볼때 국민학교와 고등학교는 별 큰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89.1%가 양호겸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어 충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세 조사대상지역 모두 70% 이상의 양호겸직교사

〈표-1〉 경기도

상황변수 학교수준	총학교수	총학급수	총학생수	총 교직원	양호교사수 (겸직교사수)	양호교사 배치율(%)	겸직교사 배치율(%)
국민학교	695	13,153	604,364	15,019	198(497)	28.5	71.5
중 학교	263	4,452	247,634	7,433	97(166)	36.9	63.1
고등학교	198	4,116	225,853	8,041	51(147)	25.8	74.2
계	1,156	21,721	1,077,851	30,493	346(810)	29.9	70.1

〈표-2〉 충청북도

상황변수 학교수준	총학교수	총학급수	총학생수	총 교직원	양호교사수 (겸직교사수)	양호교사 배치율(%)	겸직교사 배치율(%)
국민학교	357	4,519	159,825	5,426	104(253)	29.1	70.9
중 학교	108	1,674	88,754	2,888	7(101)	6.5	93.5
고등학교	66	1,416	76,584	2,866	14(52)	21.2	78.8
계	531	7,609	325,163	11,180	125(406)	23.5	76.5

〈표-3〉 전라북도

상황변수 학교수준	총학교수	총학급수	총학생수	총 교직원	양호교사수 (겸직교사수)	양호교사 배치율(%)	겸직교사 배치율(%)
국민학교	574	7,321	261,686	9,127	119(455)	20.7	79.3
중 학교	192	2,875	153,371	4,928	21(171)	10.9	89.1
고등학교	126	2,558	138,895	5,027	26(100)	20.6	79.4
계	892	12,754	553,952	19,082	166(726)	18.6	81.4

〈표-4〉 전체 조사대상지역의 양호겸직교사 배치율

상황변수 학교수준	총학교수	총학급수	총학생수	총 교직원	양호교사수 (겸직교사수)	양호교사 배치율(%)	겸직교사 배치율(%)
국민학교	1,626	24,993	1,025,875	29,572	421(1205)	25.9	74.1
중 학교	563	9,001	489,759	15,249	125(482)	22.2	77.8
고등학교	390	8,090	441,332	15,934	91(299)	23.3	76.7
계	2,579	42,084	1,956,966	60,755	637(1942)	24.7	74.3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64년부터 문교 행정인 시·도 교육위원회 별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 양호교사 배치도 각 시·시도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 조사대상지역의 학교수준별 양호겸직교사 분포 양상을 보면 국민학교 74.1%, 중학교 77.8%, 고등학교 76.7%에 배치되어 있어 학교수준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표-4).

양호교사 배치에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학교보건 전문인력의 배치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초·중·고교간에 양호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양호교사 배치기준은 지역간에 차이가 있으며, 비전문요원인 일반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보건사업을 담당하도록 배치되고 있음은 행정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져야 한다.

2. 조사대상 양호겸직교사의 제특성에 따른 분포양상

1) 학교 수준별 분포

조사 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38.7%, 충북 22.6%, 전북 38.7%로 각 대상의 지역별 전체 초·중학교의 분포인 경기 43.8%, 충북 21.2%, 전북 38%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의 학교수준별 212개교중 국민학교에 64.2%, 중학교에 35.8%가 분포하고 있다(표-5).

〈표-5〉 학교수준별 분포

지역 학교수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국민학교	50(23.6)	28(13.2)	58(27.4)	136(64.2)
중 학교	32(15.1)	20(9.4)	24(11.3)	76(35.8)
계	82(38.7)	48(22.6)	82(38.7)	212(100)

*실수:명, ():백분율

2) 근무교의 소재지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의 근무교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4.9% (4개교)가 시지역에, 95.1% (78개교)가 군지역에 위치했다.

충청북도는 18.7%(9개교)가 시지역에, 79.2% (38개교)가 군지역에 위치했다.

전라북도는 3.7%(3개교)가 시지역에, 95.1% (78개교)가 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 중 5.9%(8개교)가 시지역에 92.6%(118개교)가 군지역에 위치했고, 중학교는 10.5%(8개교)가 시지역에 89.5%(68개교)가 군지역에 위치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의 근무교는 7.5%가 시지역에, 91.5%가 군지역에 위치했다. 따라서 양호 겸직교사의 근무교의 대부분이 군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표-6).

이것은 양호교사의 충원이 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며, 여기에는 시골학교들의 적은 학생수와 학급수라는 요인도 관련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양호교사의 도시와 시골간의 고른 배치를 위한 문교부 당국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적 뒷받침으로 균형있는 학교보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학교 경영 주체별 분포

조사대상의 근무교 경영주체를 각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국립학교가 37.8%(31개교), 공립학교

46.3%(38개교), 사립학교 15.9%(13개교)였으며, 충청북도는 국립학교 33.3%(16개교), 공립학교 60.4%(29개교), 사립학교 6.3%(3개교)였다. 전라북도는 국립 36.6%(30개교), 공립 62.2%(51개교)이며, 사립학교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립학교가 우세하게 많았다.

학교수준별로 경영주체를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국립이 52.2%(72개교), 공립이 47.1%(64개교)였으며 사립학교는 없었다. 중학교는 국립 7.9%(6개교), 공립 71.1%(54개교), 사립이 21.1%(16개교)로 공립이 대부분이었다.(표-7).

4) 학급수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근무교의 학급수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의 경우 52.4%(43개교)가 1-9학급이었으며, 46.3%(38개교)가 10-18학급수준, 1.2%(1개교)가 19-27학급수준이었다. 충청북도는 1-9학급수준이 58.3%(28개교), 10-18학급수준이 22.9%(11개교), 19-27학급수준이 8.3%(4개교), 28-36 학급수준이 6.25%(3개교), 46학급 이상이 2%(1개교)였다. 전라북도 1-8학급수준이 64.6% (53 개교), 10-18학급수준이 31.7%(26개교), 19-27학급수준이 1.2%(1개교), 46학급 이상이 1.2% (1개교)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1-9학급수준이 67.6%(92개교), 10-18학급수준이 28.7%(39개교)이며, 19-27학급, 28-36 학급수준이 각각 1개교로

<표-6> 근무교의 소재지별 분포

학 교 수 준 학 교 의 지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시	2 (4.0)	2 (6.3)	4 (14.3)	5 (25.0)	2 (3.4)	1 (4.2)	8 (5.9)	8 (10.5)		
군	48 (96.0)	30 (93.8)	23 (82.1)	15 (75.0)	55 (94.8)	23 (95.8)	126 (92.6)	68 (89.5)		
무응답	0 (0.0)	0 (0.0)	1 (3.6)	0 (0.0)	1 (1.7)	0 (0.0)	2 (1.5)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7> 학교경영 주체별 분포

학교수준 경영주체	지 역		경 기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 립	28 (56.0)	3 (9.4)	14 (50.0)	2 (10.0)	29 (50.0)	1 (4.2)	71 (52.2)	8 (7.9)		
공 립	22 (44.0)	16 (50.0)	14 (50.0)	15 (75.0)	28 (48.3)	23 (95.8)	64 (47.1)	54 (71.1)		
사 립	0 (0.0)	13 (40.0)	0 (0.0)	3 (15.0)	0 (0.0)	0 (0.0)	0 (0.0)	16 (21.1)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 (1.7)	0 (0.0)	1 (0.7)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8> 학급수에 따른 분포

학교수준 학 급 수	지 역		경 기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1-9	30 (60.0)	13 (40.6)	21 (75.0)	7 (35.0)	41 (70.7)	12 (50.0)	92 (67.6)	32 (42.1)		
10-18	20 (40.0)	18 (56.3)	4 (14.3)	7 (35.0)	15 (25.9)	11 (45.8)	39 (28.7)	36 (47.4)		
19-27	0 (0.0)	1 (3.1)	1 (3.6)	3 (15.0)	0 (0.0)	1 (4.2)	1 (0.7)	5 (6.6)		
28-36	0 (0.0)	0 (0.0)	1 (3.6)	2 (10.0)	0 (0.0)	0 (0.0)	1 (0.7)	2 (2.6)		
37-4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6 이상	0 (0.0)	0 (0.0)	1 (3.6)	0 (0.0)	1 (1.7)	0 (0.0)	2 (1.5)	0 (1.3)		
무응답	0 (0.0)	0 (0.0)	0 (0.0)	1 (5.0)	0 (0.0)	0 (0.0)	1 (0.7)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0.7%를 차지했으며, 46학급수준 이상이 2개교로 1.5%를 차지하였다. 중학교는 1-9학급수준이 4.21%(32개교), 28-36학급수준이 2.6%(2개교)였으며, 37학급 이상은 없었다. 50%가까운 수가 10-18학급수준에 분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58.5%가 1-9학급수준에, 35.4%가 10-18학급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37-45학급수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없었다(표-8).

따라서 학급수가 적어질수록 양호교사는 전문교육을 받지않은 일반교사를 양호전직교사로 대치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이것은 학교의 작은 예산규모 내에서 양호교사에게 배당되는 인건비와 같은 예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것은 학교보건의 본질에 어긋나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 본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상의 양호교사 배치기준을 더욱 강력히 보장하고, 교육법시행령과의 통일을 꾀하여 단일법안을 만들어서 학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양호교사에 의한 학교보건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1~2학급 규모의 도서벽지의 학교들은 몇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보건업무를 수행해 줄 순회양호교사제도나 그 지역의 보건진료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해 각 교육위원회별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학생수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근무교의 학생수에 따른 분포양상은,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는 100명 이하가 8.5%(7개교), 101-500명 수준이 59.8%(49개교), 501-1,000명 수준이 26.8%(22개교), 1,001-1,500명 수준이 3.7%(3개교)였으며 1,501명 이상은 없었다. 충청북도는 100명 이하 14.6%(5개교), 1,501-2,000명 수준이 2.1%(1개교), 2,001명 이상이 4.2%(2개교)였다. 전라북도는 학생수 100명 이하가 7.3%(6개교), 100-500명 수준이 76.8%(63개교), 501-1,000명 수준이 11%(9개교), 1,001-1,500명 수준이 1.2%(1개교)였으며 1,501명 이상은 없었다.

학교 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1,000명 이하 13.2%(18개교), 101-500명 수준이 77.9%(106개교), 501-1,000명 수준이 4.4%(6개교), 1,001-1,500명 수준이 1.5%(2개교), 2,001명 이상이 0

.7%(1개교)였다. 중학교의 경우 100명 이하가 2.6%(2개교), 101-500명 수준이 40.8%(31개교), 501-1,000명 수준이 43.4%(33개교), 1,101-1,500명 수준이 9.2%(7개교), 1,501-2,000명 수준이 1.3%(1개교), 2,001명 이상이 1.3%(1개교)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12개교 중 64.6% 해당하는 137개교가 101-500명 수준의 학생수를 가졌으며, 18.4%(39개교)가 501-1,000명 수준으로 두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9).

학생수 101-500명 수준의 소규모 학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은 학급수에 따른 분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보건사업 발전을 위하여 이와같은 문제점을 연구하므로써 학교보건인력배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6) 교원수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근무교의 교원수에 따른 분포양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10명 이하의 교원수를 가진 학교가 24.4%(20개교), 11-20명 수준이 54.9%(45개교), 21-30명 수준이 15.9%(13개교), 31-40명 수준이 3.7%(3개교), 41-50명 수준은 1.2%(1개교), 51명 이상은 없었다. 충청북도 1-10명 수준이 39.6%(19개교), 11-20명 수준이 25%(12개교), 21-30명 수준이 18.8%(9개교), 31-40명 수준이 4.2%(2개교), 41-50명 수준이 8.3%(4개교)였으며 51명 이상은 없었다. 전라북도는 1-10명 수준이 39.0%(32개교), 11-20명 수준이 51.2%(42개교), 21-30명 수준이 6.1%(5개교), 31-40명 수준이 1.2%(1개교), 41-50명 수준이 1.2%(1개교), 51명 이상이 1.2%(1개교)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 49.3%(67개교)가 1-10명 수준의 교원수를 가졌으며 46.3%(63개교)가 11-20명, 2.2%(3개교)가 21-30명 수준, 1.5%(2개교)가 41-50명 수준이었고, 0.7%(1개교)만이 51명 이상의 교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5.3%(4개교) 1-10명 수준, 47.4%(36개교)가 11-20명 수준, 31.6%(24개교)가 21-30명 수준, 9.2%(7개교)가 31-40명 수준, 5.3%(4개교)가 41-50명 수준이었으며, 51명 이상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학교의 경우는 모두 90%정도가 1-20명의 교원수를 가졌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80% 가까이가 11-30명의 교원수를 가진

〈표-9〉 학생수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100 이하	5 (10.0)	2 (6.3)	7 (25.0)	0 (0.0)	6 (10.3)	0 (0.0)	18 (13.2)	2 (2.6)
101-500	40 (80.0)	9 (28.1)	17 (60.7)	8 (40.0)	49 (84.5)	14 (58.3)	106 (77.9)	31 (40.8)
501-1000	5 (10.0)	17 (53.1)	1 (3.6)	7 (35.0)	0 (0.0)	9 (37.5)	6 (4.4)	33 (43.4)
1001-1500	0 (0.0)	3 (9.4)	2 (7.1)	3 (15.0)	0 (0.0)	1 (4.2)	2 (1.5)	7 (9.2)
1501-2000	0 (0.0)	0 (0.0)	0 (0.0)	1 (5.0)	0 (0.0)	0 (0.0)	0 (0.0)	1 (1.3)
2000 이상	0 (0.0)	0 (0.0)	1 (3.6)	1 (5.0)	0 (0.0)	0 (0.0)	1 (0.7)	1 (1.3)
무응답	0 (0.0)	1 (3.1)	0 (0.0)	0 (0.0)	3 (5.2)	0 (0.0)	3 (2.2)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것으로 나타났다(표-10).

7) 학생의 성별에 따른 분포

학생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국민학교는 100%(50개교) 남여공학이며, 중학교 중 3.1%(1개교)가 남학교 이고, 18.8%(6개교)가 여학교였으며, 78.1%(25개교)가 남여공학이었다. 충청북도의 경우 국민학교는 100%(28개교)가 남여공학이며, 중학교 중에서 5.0%(1개교)가 남학교, 15.0%(3개교)가 여학교였으며, 80.0%(16개교)가 남여공학이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민학교는 1.7%(1개교)가 여학교, 96.9%(56개교)가 남여공학이었으며 중학교는 12.5%(3개교)가 남학교였으며, 여학교는 없고, 87.5%(21개교)가 남여공학이었다. 국민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두 남여공학인데 결과에 있어 남학교와 여학교의 응답이 나온 이유는 우연히 학교의 구성학생이 현재 남학생 만으로 혹은 여학생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학교는 모두 남여공학이

며, 중학교의 경우 81.6%(62개교)로 대부분이 남여공학이었다(표-11).

8) 양호겸직교사의 성별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양호겸직교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도별로 볼 때, 경기도는 12.2%(10명)가 남자교사였으며, 87.8%(72명)가 여교사였다. 충청북도는 남자교사는 없었으며, 여자 100%(48명)였다. 전라북도는 2.4%(2명)가 남자교사였으며, 97.6%(80명)가 여자교사였다. 학교수준별로 볼 때, 국민학교는 5.1%(7명)가 남자교사였으며, 94.9%(129명)가 여자교사였다. 중학교는 6.6%(5개교)가 남자교사였으며, 93.4%(71명)가 여자교사였다.

남자교사의 양호겸직비율이 크지 않다하더라도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남자교사가 감수성이 예민한 국민학교 고학년 여학생들과 중학교 여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생리를 포함한 보건교육이나 기타 양호업무를 수행함에는 교사 자신과 학생 양쪽 모두의 수치감이나 제공되어야 할 보건

<표-10> 교원수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교 원 수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1-10	17 (34.0)	3 (9.4)	19 (67.9)	0 (0.0)	31 (53.4)	1 (4.2)	67 (49.3)	4 (5.3)		
11-20	32 (64.0)	13 (40.6)	5 (17.9)	7 (35.0)	26 (44.8)	16 (66.7)	63 (46.3)	36 (47.4)		
21-30	1 (2.0)	12 (37.5)	2 (7.1)	7 (35.0)	0 (0.0)	5 (20.8)	3 (2.2)	24 (31.6)		
31-40	0 (0.0)	3 (9.4)	0 (0.0)	2 (10.0)	0 (0.0)	1 (4.2)	0 (0.0)	7 (9.2)		
41-50	0 (0.0)	1 (3.1)	2 (7.1)	2 (10.0)	0 (0.0)	1 (4.2)	2 (1.5)	4 (5.3)		
51 이상	0 (0.0)	0 (0.0)	0 (0.0)	0 (0.0)	1 (1.7)	0 (0.0)	1 (1.7)	0 (0.0)		
무응답	0 (0.0)	0 (0.0)	0 (0.0)	1 (5.0)	0 (0.0)	0 (0.0)	0 (0.0)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11> 학생의 성별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학 생 의 성 별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남 학 교	0 (0.0)	1 (3.1)	0 (0.0)	1 (5.0)	1 (1.7)	3 (12.5)	1 (0.7)	5 (6.6)		
여 학 교	0 (0.0)	6 (18.8)	0 (0.0)	3 (15.0)	1 (1.7)	0 (0.0)	1 (0.7)	9 (11.8)		
남여공학	50 (100.0)	25 (78.1)	28 (100.0)	16 (80.0)	56 (96.6)	21 (87.5)	134 (98.5)	82 (81.6)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지식의 결여 등의 적지않은 제반문제가 있으리라
사려된다(표-12).

9) 양호겸직교사의 연령에 따른 분포

양호겸직교사의 연령에 따른 분포양상은 지역별
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39.0%(32명)가 20-24세
수준이고, 35.4%(29명)가 25-29세 수준으로 74.

4%가 20대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33.3%(16명)가 20-24세 수준 25%(12명)가 25-29세 수준으로 60%정도가 20대였으며, 31.3%(15명)정도가 30대였다. 전라북도는 57.3%가 20대였으며, 28.0%가 30대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60.3%(82명)가 20대였고, 24.3%(33명)가 30대, 11.8%(16명)가 40대, 50세 이상이 3.7%(5명)였다. 중학교는 71.0%(54명)가 20대이고, 22.4%(17명)가 30대, 2.6%(2명)가 40대, 50세 이상이 3.9%(3명)로 나타났

<표-12> 교사의 성별에 따른 분포

교성 사 의 별	학 교 수 준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남		6 (12.0)	4 (12.5)	0 (0.0)	0 (0.0)	1 (1.7)	1 (4.2)	7 (5.1)	5 (6.6)		
여		44 (88.0)	28 (87.5)	28 (100.0)	20 (100.0)	57 (98.3)	23 (95.8)	129 (94.9)	71 (93.4)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13> 연령에 따른 분포

연 령	학 교 수 준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20-24		26 (52.0)	6 (18.8)	12 (42.9)	4 (20.0)	17 (29.3)	5 (20.8)	55 (40.4)	15 (19.7)		
25-29		12 (24.0)	17 (53.1)	2 (7.1)	10 (50.0)	13 (22.4)	12 (50.0)	27 (19.9)	39 (51.3)		
30-34		5 (10.0)	2 (6.3)	2 (7.1)	5 (25.0)	4 (6.9)	5 (20.8)	11 (8.1)	12 (15.8)		
35-39		2 (4.0)	3 (9.4)	7 (25.0)	1 (5.0)	13 (22.4)	1 (4.2)	22 (16.2)	5 (6.6)		
40-44		4 (8.0)	0 (0.0)	3 (10.7)	0 (0.0)	6 (10.3)	0 (0.0)	13 (9.6)	0 (0.0)		
45-49		1 (2.0)	2 (6.3)	1 (3.6)	0 (0.0)	1 (1.7)	0 (0.0)	3 (2.2)	2 (2.6)		
50-54		0 (0.0)	2 (6.3)	1 (3.6)	0 (0.0)	1 (1.7)	1 (4.2)	2 (1.5)	3 (3.9)		
55세 이상		0 (0.0)	0 (0.0)	0 (0.0)	0 (0.0)	3 (5.2)	0 (0.0)	3 (2.2)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호겸직교사의 연령은 60% 이상이 20대였으며, 그 다음이 30대로 교사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3).

10) 양호겸직교사의 결혼 상태별 분포

양호겸직교사의 결혼 상태별 분포양상을 보면 세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54.7%(116명)가 기혼이고, 44.8%(95명)가 미혼이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미혼 65.9%, 기혼이 34.1%로 미혼교사가 더 많았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 53.7%(73명)가 기혼, 45.6%(62명)가 미혼이었으며, 중학교는 56.6%(43명)가 기혼, 43.4%(33명)가 미혼으로 학교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

11) 양호겸직교사의 교육정도별

양호겸직교사의 출신학교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전문대학이나 간호대학(간호학과) 출신은 없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86.8%(118명)가 교육대학 출신으로 대부분이었고, 4.4%(6명)가 전문대학 출신, 0.7%(1명)가 사범대학출신, 5.1%(7명)가 일반대학 출신이고, 2.2%(3명)가 사범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64.5%(49명)가 사범대학 출신이었고, 34.2%(26명)가 일반대학 출신이었고,

12) 양호겸직교사의 교육경력별 분포

양호겸직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분포를 보면, 도별로 볼 때, 경기도는 51.2%(42명)가 2년 미만이다(표-15).

었고, 15.9%(13명)가 2-5년 미만이며, 11.0%(9명)가 5-10년 미만, 7.3%(6명)가 10-15년 미만, 13.4%(11명)가 15-20년 미만이었다. 충청북도는 37.5%(18명)가 2년 미만, 18.8%(9명)가 2-5년 미만, 12.5%(6명)가 5-10년 미만, 8.3%(4명)가 10-15년 미만, 1.7%(8명)가 15-20년 미만, 20년 이상이 4.2%(2명)였다. 전라북도는 40.2%(33명)가 2년 미만이었으며, 7.3%(6명)가 2-5년 미만, 17.1%(14명)가 5-10년 미만, 11.0%(9명)가 10-15년 미만, 15.9%(13명)가 15-20년 미만이었으며, 20년 이상이 8.5%로 모두 국민학교에 해당되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44.1%(60명)가 2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져 월등히 많았으며, 15-20년 미만의 경력이 19.1%(26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다른 수준들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분포되어 있었다. 중학교는 43.4%(33명)가 2년 미만이었으며, 22.4%(17명)가 2-5년 미만이었으며, 18.4%(14명)가 5-10년 미만이었으며, 20년 이상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46.7%가 2년 미만의 교육경력에 가졌으며, 다른 수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겸직교사는 모두

<표-14> 결혼상태별 분포

학 교 수 준 결 혼 상 태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미 혼	33 (66.0)	21 (65.6)	14 (50.0)	10 (50.0)	26 (44.8)	12 (50.0)	73 (53.7)	43 (56.6)		
기 혼	17 (34.0)	11 (34.4)	14 (50.0)	10 (50.0)	31 (53.4)	12 (50.0)	62 (45.6)	33 (43.4)		
무 응 답	0 (0.0)	0 (0.0)	0 (0.0)	0 (0.0)	1 (1.7)	0 (0.0)	1 (0.7)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15〉 교육 정도별 분포

학 교 수 준 교 육 정 도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충 청 북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전문대(일반)	1 (2.0)	0 (0.0)	3 (10.7)	0 (0.0)	2 (3.4)	0 (0.0)	6 (4.4)	0 (0.0)
간호전문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교육대학	46 (92.0)	0 (0.0)	22 (78.6)	0 (0.0)	50 (86.2)	0 (0.0)	118 (86.8)	0 (0.0)
사범대학	0 (0.0)	16 (50.0)	0 (0.0)	14 (70.0)	1 (1.7)	19 (79.2)	1 (0.7)	49 (64.5)
간 호 대 학 (학 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년 제 일 반 대 학	3 (6.0)	15 (46.9)	2 (7.1)	6 (30.0)	2 (3.4)	5 (20.8)	7 (5.1)	26 (34.2)
사범고등학교	0 (0.0)	0 (0.0)	1 (3.6)	0 (0.0)	2 (3.4)	0 (0.0)	3 (2.2)	0 (0.0)
무 응 답	0 (0.0)	1 (3.1)	0 (0.0)	0 (0.0)	1 (1.7)	0 (0.0)	1 (0.7)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국민학교에 해당되었다(표-16). 따라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조차 숙련되기에는 짧은 2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학교보건업무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양호겸직교사제도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학교보건사업의 저해요인으로서 학교인구의 건강을 담당할 수 없는 인력임을 알 수 있다.

13) 양호겸직 경력별 분포

양호겸직교사의 양호겸직경력에 1년 미만이 7.93%(65명), 1년-2년 미만이 8.5%(7명), 2년 이상이 7.3%(6명)로 대부분이 1년 미만이였다. 충청북도는 1년 미만이 66.7%(32명), 1년-2년 미만이 22.9%(11명)이며, 2년 이상은 10.4%(5명)로 역시 1년 미만이 월등히 많았다. 전라북도는 1년 미만이

72.0%(59명)로 대부분이였고, 각 수준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년 이상이 28%(23명)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75.7%(103명)가 1년 미만이였고, 중학교는 69.7%가 1년 미만으로 학교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가장 많고 양호겸직교사 경력이 많아질수록 해당 교사수는 적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17). 70%정도가 1년 미만의 양호겸직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해마다 겸직업무의 분담이 바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경험이 거의 없는 교사들을 통해 포괄적 건강사업인 학교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14) 양호겸직 연수교육 참가횟수에 따른 분포

〈표-16〉 교육 경력별 분포

학 교 수 준 교육 경력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충 청 북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2년 미만	28 (56.0)	14 (43.8)	10 (35.7)	8 (40.0)	22 (37.9)	11 (45.8)	60 (44.1)	33 (43.4)
2-5년 미만	5 (10.0)	8 (25.0)	4 (14.3)	5 (25.0)	2 (3.4)	4 (16.7)	11 (8.1)	17 (22.4)
5-10년 미만	6 (12.0)	3 (9.4)	1 (3.6)	5 (25.0)	8 (13.8)	6 (25.0)	15 (11.0)	14 (18.4)
10-15년 미만	5 (10.0)	1 (3.1)	2 (7.1)	2 (10.0)	7 (12.1)	2 (8.3)	14 (10.3)	5 (6.6)
15-20년 미만	6 (12.0)	5 (15.6)	8 (28.6)	0 (0.0)	12 (20.7)	1 (4.2)	26 (19.1)	6 (7.9)
20년이상	0 (0.0)	0 (0.0)	2 (7.1)	0 (0.0)	7 (12.7)	0 (0.0)	9 (6.6)	0 (0.0)
무 응 답	0 (0.0)	1 (3.1)	1 (3.6)	0 (0.0)	0 (0.0)	0 (0.0)	1 (0.7)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17〉 양호검직 경력별 분포

학 교 수 준 검 직 경력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충 청 북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계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1년 미만	42 (84.0)	23 (71.9)	19 (67.9)	13 (65.0)	42 (72.4)	17 (70.8)	103 (75.7)	53 (69.7)
1-2년 미만	5 (10.0)	2 (6.3)	8 (28.6)	3 (15.0)	4 (6.9)	2 (8.3)	17 (12.5)	7 (9.2)
2-3년 미만	1 (2.0)	0 (0.0)	0 (0.0)	2 (10.0)	5 (8.6)	2 (8.3)	6 (4.4)	4 (5.3)
3-4년 미만	0 (0.0)	3 (9.4)	1 (3.6)	1 (5.0)	6 (10.3)	1 (4.2)	7 (5.1)	5 (6.6)
4년 이상	0 (0.0)	2 (6.3)	0 (0.0)	1 (5.0)	1 (1.7)	2 (8.3)	1 (0.7)	5 (6.6)
무 응 답	2 (4.0)	2 (6.3)	0 (0.0)	0 (0.0)	0 (0.0)	0 (0.0)	2 (1.5)	2 (2.6)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례 양호겸직 교사 연수교육에 참가한 횟수를 보면 43.9%(93명)가 이전의 연수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41.5%(88명) 1번의 연수교육경험이 있었으며, 11.8%(25명)가 2번, 0.5%(1명)에서 3번의 연수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간의 연수교육 횟수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학교수준간에도 별 차이는 없었다(표-18).

대부분이 양호겸직을 맡고 처음 받는 연수교육이거나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각 학교의 양호겸직교사가 해마다 바뀐다는 것, 둘째는 계속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양호겸직교사가 해마다 바뀌는 것은 각 학교의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으나 교사의 학교보건의식의 부족이나 의욕부진 등의 이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15) 양호업무 이외의 겸직업무 수요에 따른 분포 양호겸직교사들의 양호업무 이외에 맡고 있는 겸직업무의 수를 조사한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또 다른 겸직이 전혀 없는 예가 6.11%(5명), 양호업무의 겸직업무가 하나인 예가 58.5%(48명), 둘인 예가 26.8%(22명), 셋인 예가

7.3%(6명), 넷인 예가 1.2%(1명)이었다. 충청북도 는 양호업무의 겸직업무가 없는 경우가 6.3%(3명), 하나인 예가 43.7%(21명), 둘인 예가 31.3%(15명), 셋인 예가 16.7%(8명), 넷인 예가 2.1%(1명)였다. 전라북도는 양호이외의 겸직업무가 없는 경우가 6.1%(5명), 하나인 예가 51.2%(42명), 둘인 예가 20.7%(17명), 셋인 예가 19.5%(16명), 넷인 예가 2.4%(2명)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42.6%(58명)가 하나, 33.1%(45명)가 둘, 22.3%(31명)가 세가지 이상의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69.7%(53명)가 하나, 11.8%(9명)가 둘, 3.3%(3명)가 세가지 겸직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9).

따라서 대부분의 양호겸직교사가 양호 이외의 한 두가지 업무를 더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교사의 과중한 겸임 상태와 그로 인한 양호겸직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16) 양호겸직에 임하게 된 동기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양호겸직교사들의 양호겸직에 임하게 된 동기에 따른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선택한 예가 경기도 3.7%(3명),

<표-18> 양호겸직 연수교육 참가횟수에 따른 분포

학교수준 연수교육 참가수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0	32 (64.0)	0 (0.0)	21 (75.0)	17 (85.0)	38 (65.5)	17 (70.8)	59 (43.4)	34 (44.7)
1	14 (28.0)	20 (62.5)	7 (25.0)	3 (15.0)	19 (32.8)	7 (29.2)	58 (42.6)	30 (39.5)
2	0 (0.0)	10 (31.3)	0 (0.0)	0 (0.0)	1 (1.7)	0 (0.0)	15 (11.0)	10 (13.2)
3	0 (0.0)	1 (3.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무응답	4 (8.0)	1 (3.1)	0 (0.0)	0 (0.0)	0 (0.0)	0 (0.0)	4 (2.9)	1 (1.3)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충청북도 2.1%(1명), 전라북도 2.4%(2명)였다. '상사의 겸직요구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말게 된 예가 경기도의 경우 12.2%(10명), 충청북도 18.2%(9명), 전라북도 14.6%(12명)였다. '상의 하달식 명령에 의해' 무조건 말게된 경우는 경기도 8 2.9%(68명), 충청북도 75.0%(36명), 전라북도 8

1.7%(67명)였다. 세지역 모두 80%정도가 '상의 하달식 명령에 의해' 양호겸직업무를 말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모두 80% 이상이 '상의하달식 명령에 의해' 양호겸직업무를 말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표-20).

<표-19> 양호업무 이외의 겸직업무 수효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기 타 겸 직 수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0	0 (0.0)	5 (15.6)	2 (7.1)	1 (5.0)	0 (0.0)	5 (20.8)	2 (1.5)	11 (14.5)		
1	26 (52.0)	22 (68.8)	7 (25.0)	14 (70.0)	25 (43.1)	17 (70.8)	58 (42.6)	53 (69.7)		
2	17 (34.0)	5 (15.6)	12 (42.9)	3 (15.0)	16 (27.6)	1 (4.2)	45 (33.1)	9 (11.8)		
3	6 (12.0)	0 (0.0)	6 (21.4)	2 (10.0)	15 (25.9)	1 (4.2)	27 (19.9)	3 (3.3)		
4	1 (2.0)	0 (0.0)	1 (3.6)	0 (0.0)	2 (3.4)	0 (0.0)	4 (2.9)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20> 양호겸직에 임하게 된 동기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겸 직 동 기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2 (4.0)	1 (3.1)	1 (3.6)	0 (0.0)	2 (3.4)	0 (0.0)	5 (3.7)	1 (1.3)		
상사의 겸직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	4 (8.0)	6 (18.8)	8 (28.6)	1 (5.0)	8 (13.8)	4 (16.7)	20 (14.7)	11 (14.5)		
상의하달식 명령에 의하여	44 (88.8)	24 (75.0)	18 (64.3)	18 (90.0)	47 (81.0)	20 (83.3)	109 (80.1)	62 (81.6)		
무 응 답	0 (0.0)	1 (3.1)	1 (3.6)	1 (5.0)	1 (1.7)	0 (0.0)	2 (1.5)	2 (2.6)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따라서 대부분이 교사의 의견이나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학교행정자측의 일방적인 업무명령에 의해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양호겸직교사에 의한 학교보건업무수행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17)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른 분포

조사대상 양호겸직교사들의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의 경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예가 53.7%(44명)였고, '흥미있다'가 25.6%(21명), '흥미없다'가 11.0%(9명), '전혀 흥미없다' 6.1%(5명), '매우 흥미있다' 3.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66.7%(32명), '흥미있다'가 16.7%(8명), '매우 흥미있다'가 10.4%(5명), '흥미없다'가 6.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69.5%(57명), '흥미있다'가 14.6%(12명), '흥미없다'가 9.8%(8명), '전혀 흥미없다'가 4.9%(4명), '매우 흥미있다'가 1.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볼 때, 국민학교, 중학교, 모두, '그저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60% 전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흥미있다', '흥미없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예를 제외하면, 23.6%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2.7%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21). '그저 그렇다'의 응답이 60% 전후를 차지함은 극단적인 응답을 피하려는 심리반응으로 생각한다.

18) 양호겸직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른 분포양상

양호겸직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분포는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는 '보통이다'가 41.5%(34명), '불만이다'가 40.2%(33명), '매우 불만이다'가 12.2%(10명), '만족하다'와 '매우 만족하다'가 4.9%(4명)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충청북도는 '불만이다'가 37.5%(18명), '보통이다'가 35.4%(17명), '만족하다'가 12.5%(6명), '매우 불만이다'가 10.4%(5명), '매우 만족하다' 4.2%(2명)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보통이다'가 51.2%(42명), '불만이다'가 34.1%(28명), '매우 불만이다' 8.5%(7명), '만족하다'가 4.9%(4명)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47.1%(64명)가 '보통이다'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33.8%(46명)가 '불만이다', 11.0%(15명)가 '매우 불만이다'로

<표-21>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른 분포

학 교 수 준 흥 미 정 도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매우 흥미있다	2 (4.0)	1 (3.1)	5 (17.9)	0 (0.0)	1 (1.7)	0 (0.0)	8 (5.9)	1 (1.3)
흥미 있다	13 (26.0)	8 (25.0)	4 (14.3)	4 (20.0)	9 (15.5)	3 (12.5)	26 (19.1)	15 (19.7)
그저 그렇다.	27 (54.0)	17 (53.1)	19 (67.9)	13 (65.0)	43 (74.1)	14 (58.3)	89 (65.4)	44 (57.9)
흥미 없다	5 (10.0)	4 (12.5)	0 (0.0)	3 (15.0)	4 (6.9)	4 (16.7)	9 (6.6)	11 (14.5)
전혀 흥미없다	3 (6.0)	2 (6.3)	0 (0.0)	0 (0.0)	1 (1.7)	3 (12.5)	4 (2.9)	5 (6.6)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응답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강했다. 중학교는 '불만이다'가 43.4%(3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8.2%(29명)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학교의 경우 과목 담당제에 따라 일반교사들이 자신의 전공과목만 강의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이다'로 응답한 예가 가장 많은 것은 양쪽의 극단적인 의견을 피하려는 심리작용으로 생각되며, 양호검직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표-22).

19) 양호검직 불만족 이유에 따른 분포양상.
양호검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만족 이유에 따른 분포를 보면, 세지역 모두가 '과다한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40% 전후였으며 그 다음이 '학교보건에 대한 지식부족', '학교보건설비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역시 '과다한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국민학교 40.4%(55명), 중학교 35.5%(2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보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국민학교 16.2%(22명)로 나타

〈표-22〉 양호검직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른 분포양상

학교수준 만족정도	지 역		경 기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매우 만족한다	0 (0.0)	2 (6.3)	1 (3.6)	1 (5.0)	0 (0.0)	0 (0.0)	1 (0.7)	3 (3.9)		
만족한다	1 (2.0)	1 (3.1)	6 (21.4)	0 (0.0)	3 (5.2)	1 (4.2)	10 (7.4)	2 (2.6)		
보통이다	22 (44.0)	12 (37.5)	11 (39.3)	6 (30.0)	31 (53.4)	11 (45.8)	64 (47.1)	29 (38.2)		
불만이다	20 (40.0)	13 (40.6)	7 (25.0)	11 (55.0)	19 (32.8)	9 (37.5)	46 (33.8)	33 (43.4)		
매우 불만이다	7 (14.0)	3 (9.4)	3 (10.7)	2 (10.0)	5 (8.6)	2 (8.3)	15 (11.0)	7 (9.2)		
무 응답	0 (0.0)	1 (3.1)	0 (0.0)	0 (0.0)	0 (0.0)	1 (4.2)	0 (0.0)	2 (2.6)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났다. 세번째가 '학교보건 설비부족'으로 국민학교 11.8%(16명), 중학교 13.2%(10명)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다한 업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아 검직업무 수요에 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검직 업무의 과중이 양호업무 수행에 지대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표-23).

20) 검직업무중 가장 어려운 업무

양호검직교사들의 검직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

를 조사해본 결과 도별로 볼 때, 경기도는 '간호제공'이 36.6%(30명)로 가장 많았고, '보건교육'이 28.0%(23명), '양호실관리'가 17.1%(14명), '환경관리'가 8.5%(7명), '건강관리(신체·체격검사 실시)'가 3.7%(3명)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보건교육'이 39.6%(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간호제공'으로 25%(12명)였으며, '환경관리'가 16.7%(8명), '양호실관리'가 8.3%(4명), '건강관리'가 4.2%(2명)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간호제공'이 36.6%

〈표-23〉 양호검직 불만족 이유에 따른 분포양상

학 교 수 준 불 만 족 이유	지 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계	
	경 기도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국민학교	중 학 교
학교보건에 대한 대한 지식부족	10 (20.0)	8 (25.0)	2 (7.1)	2 (10.0)	10 (17.2)	2 (8.3)	22 (16.2)	12 (15.8)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의 결여	1 (2.0)	0 (0.0)	0 (0.0)	1 (5.0)	0 (0.0)	0 (0.0)	1 (0.7)	1 (1.3)
과다한 업무	22 (44.0)	14 (43.8)	12 (42.9)	6 (30.0)	21 (36.2)	7 (29.2)	55 (40.4)	27 (35.5)
양호업무수행을 위한 양호실 및 기타시설부족	5 (10.0)	4 (12.5)	1 (3.6)	3 (15.0)	10 (17.2)	3 (12.5)	16 (41.8)	10 (13.2)
동료교사들의 몰이해	2 (4.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5)	0 (0.0)
기 타	0 (0.0)	1 (3.1)	0 (0.0)	3 (15.0)	1 (1.7)	0 (0.0)	1 (0.7)	4 (5.3)
무 응 답	10 (20.0)	5 (15.6)	13 (46.4)	5 (25.0)	16 (27.6)	12 (50.0)	39 (28.7)	22 (28.9)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30명), '보건교육'이 30.5%(25명), '건강관리'가 9.8%(8명), '환경관리'가 8.5%(7명), '양호실 관리'가 7.3%(6명)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보건교육'이 34.6%(47명)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이 '간호제공'으로 33.1%(45명)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간호제공'이 35.5%(2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건교육'으로 26.3%(20명)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제공'(34%, 72명)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보건교육'(31.6%, 67명)이라고 응답하여 간호제공과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학교보건 담당자인 양호교사가 절대로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표-24).

21) 학교보건에 관한 출처

양호검직 교사들의 학교보건에 관한 지식의 출처를 보면 도별로 볼 때, 경기도는 '매스컴'이 31.7%

(26명), '개인적인 건강경험'이 26.8%(22명),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이 23.2%(19명),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11.0%(9명)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이 31.3%(5명), '매스컴'과 '개인적 건강경험'이 각각 25%(12명),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2.1%(1명)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매스컴'과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이 각각 30.5%(25명), '개인적 건강경험'이 28.0%(23명),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3.7%(3명)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매스컴'과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 '개인적 건강경험'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가장 적었다. 중학교는 '매스컴'(34.2%, 26명),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30.3%, 23명), '개인적 건강경험'(25%, 1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가장 적었다. 학교보건사업 중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보건지식의 출처가 매스컴이나 개인적 건강경험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표-24〉 겸직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

학 교 수 준 어 려 운 부 류	지 역		경 기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양호실관리	7 (14.0)	7 (21.9)	3 (10.7)	1 (5.0)	5 (8.6)	1 (4.2)	15 (11.0)	9 (11.8)		
보건교육	14 (28.0)	9 (28.1)	15 (53.6)	4 (20.0)	18 (31.0)	7 (29.2)	47 (34.6)	20 (26.3)		
간호제공	19 (38.0)	11 (34.4)	4 (14.3)	8 (40.0)	22 (37.9)	8 (33.3)	45 (33.1)	27 (35.5)		
건강관리	1 (2.0)	2 (6.3)	0 (0.0)	2 (10.0)	5 (8.6)	3 (12.5)	6 (4.4)	7 (9.2)		
환경관리	6 (12.0)	1 (3.1)	4 (14.3)	4 (20.0)	5 (8.6)	2 (8.3)	15 (11.0)	7 (9.2)		
무 응 답	3 (6.0)	2 (6.3)	2 (7.1)	1 (5.0)	3 (5.2)	3 (12.5)	8 (5.9)	6 (8.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것은 건강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교사의 지식수준의 전무상태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보건교육 과정에 큰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현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세미나 및 보수교육'은 6.1%(13명)로 극히 적은 수가 응답하여 비전문가인 양호겸직교사들은 전문지식을 위한 양호업무보수교육이나 세미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마스크이나 개인적인 건강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보건교육이나 간호제공, 환경관리 등의 전문적인 학교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전문적인 양호교사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목 뿐인 학교보건이 될 것이다.(표-25)

22) 학교보건 전문요원의 필요성

조사대상 양호겸직교사들이 학교보건 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 '절대 필요하다'가 74.4%(61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필요하

다'로 20.7%(17명), '보통이다'가 2.5%(2명)였고, '필요없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2.4%(2명)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절대 필요하다'가 64.6%(31명), '필요하다'가 33.3%(16명), '보통이다' 2.1%(1명)이었으며, '필요없다'의 응답은 없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절대 필요하다'가 53.6%(44명), '필요하다'가 41.5%(34명), '보통이다'가 3.7%(3명), '필요없다'가 1.2%(1명)이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공통적으로 '절대 필요하다'가 가장 많고 다음이 '필요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64.7%(88명)가, 중학교는 63.2%(48명)가 '절대 필요하다'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요하다'로 국민학교 30.9%(42명), 중학교 32.9%(25명)였다. 따라서 학교수준별 차이도 거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대다수의(95.8%, 203명) 비전문가인 양호겸직교사들 스스로도 학교보건을 위한 전문인력인 양호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6)

〈표-25〉 학교보건에 관한 지식의 출처

학 교 수 준 지 식 의 출 처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매 스 콤	15 (30.0)	11 (34.4)	4 (14.3)	8 (40.0)	18 (31.0)	7 (29.2)	37 (27.2)	26 (34.2)		
학 교 보 건 관 계 전 문 서 적	10 (20.0)	9 (28.1)	11 (39.3)	4 (20.0)	15 (25.9)	10 (41.7)	36 (26.5)	23 (30.3)		
개 인 적 건 장 경 험	14 (28.0)	8 (25.0)	7 (25.0)	5 (25.0)	17 (29.3)	6 (25.0)	38 (27.9)	19 (25.0)		
세 미 나 및 보 수 교 육	5 (10.0)	4 (12.5)	1 (3.6)	0 (0.0)	3 (5.2)	0 (0.0)	9 (6.6)	4 (5.3)		
기 타	3 (6.0)	0 (0.0)	2 (7.1)	2 (10.0)	2 (3.4)	0 (0.0)	7 (5.2)	2 (2.6)		
무 용 답	3 (6.0)	0 (0.0)	3 (10.7)	1 (5.0)	3 (5.2)	1 (4.2)	9 (6.6)	2 (2.6)		
계	50 (100)	32 (100)	20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표-26〉 학교보건 전문요원의 필요성

학 교 수 준 전 문 요 원 의 필 요 성	지 역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전 라 북 도		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절 대 필 요 하 다	39 (78.0)	22 (68.8)	19 (67.9)	12 (60.0)	30 (51.7)	14 (58.3)	88 (64.7)	48 (63.2)		
필 요 하 다	7 (14.0)	10 (31.3)	9 (32.1)	7 (35.0)	26 (44.8)	8 (33.3)	42 (30.9)	25 (32.9)		
보 통 이 다	2 (4.0)	0 (0.0)	0 (0.0)	1 (5.0)	2 (3.4)	1 (4.2)	4 (2.9)	2 (2.6)		
필 요 없 다	2 (4.0)	0 (0.0)	0 (0.0)	0 (0.0)	0 (0.0)	1 (4.2)	2 (1.5)	1 (1.3)		
전 혀 필 요 없 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용 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0 (100)	32 (100)	28 (100)	20 (100)	58 (100)	24 (100)	136 (100)	76 (100)		

4.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양호겸직교사의 분포양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교통계연보를 고찰하고, 1988년 8월 3일에서 8월 11일에 걸쳐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연례 양호겸직교사 연수교육에 참가한 212명의 양호겸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지도교수가 타당성을 검토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전문요원인 양호겸직교사 배치율은 경기도 70.1%, 충청북도 76.5%, 전라북도 8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는 전체 국민학교의 74.1%, 중학교의 77.8%, 고등학교의 76.7%의 배치율을 보여 학교수준의 별 차이는 없었다.

2) 조사대상 지역별 양호겸직교사의 분포는 경기 38.7%, 충북 22.2%, 전북 38.7%였고, 학교수준별 분포는 국민학교 64.2%, 중학교 35.8%였다.

3) 학교가 위치한 지역별 분포는 시지역 7.5%, 군지역 91.5%로서 대부분이 군지역에서 비전문요원인 양호겸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4) 학교의 경영주체는 공립 55.7%, 국립 36.3%, 사립 7.5%의 순이었다.

5) 학급수에 따른 양호겸직교사의 분포는 1-9학급군이 58.5%, 10-18학급군이 35.4%였으며, 국민학교의 경우 18학급 이하가 96.3%로 대부분이었고, 중학교는 9학급 이하가 42.1%, 10-18학급군이 47.4%였다.

6) 학생수에 따른 양호겸직교사의 분포는 101-500명 군이 64.6%, 501-1,000명 군이 18.4%였으며, 국민학교는 101-500명 군이 77.9%로서 가장 많고, 중학교는 501-1,000명 군이 43.4%로 가장 많았다. 교원수에 따른 양호겸직교사의 분포는 11~20명 군이 46.6%로 가장 많았고, 국민학교의 경우 1~20명 군이 90% 정도였고, 중학교의 경우 11~30명 군이 80%였다.

7) 양호겸직교사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94.3%,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0%이상이고, 결혼상태별로 본 분포는 기혼과 미혼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8)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국민학교의 경우 86.8%가 교육대학 출신이었고, 중학교의 경우는 6

4.5%가 사범대학 출신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경력에 따른 분포는 2년 미만 군이 46.7%, 국민학교의 경우 20년 이상의 경력군이 6.6%를 보였으며, 양호겸직경력은 1년 미만이 73.7%로 가장 높았다.

연수경험이 전혀 없는 군이 43.9%이며 양호업무 이외의 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있는 경우가 94%였다. 양호겸직에 임하게 동기는 '상의 하달식 명령에 의해' 무조건 맡게된 군이 80% 이상이었다.

9)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 정도에 따른 분포는 '그저그렇다'가 6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23.6%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양호겸직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른 분포는 '보통이다'가 43.9% '불만' 혹은 '매우 불만'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응답이 47.6%였으며, '만족' 혹은 '매우 만족'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응답이 7.5% 뿐이었다.

10) 양호겸직불만족 이유에 따른 분포는 이중삼중의 '과다한 업무'가 37.9%였으며, 그다음이 '학교보건에 대한 지식부족', '학교보건 설비부족'의 순으로 전문성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

11) 겸직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는 '간호제공'으로서 34.0%였고 그 다음 '보건교육' 31.6%로 전문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2) 학교보건에 관한 지식의 출처는 '매스컴'이나 '개인적 경험'이 56.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미나 및 보수교육' 참여는 6.1%로 극히 낮게 분포했다.

13) 학교보건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별이나 학교수준간에 별차이 없이 95.8%로 대다수가 학교보건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제 언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사업이 확고히 정착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이원화되어 있고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교보건사업을 확고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학교보건관계법령의 일원화와 개선을 제언한다.

2) 학교경영자나 행정자,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학교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민간단체나 학부모들이 하는 학교보건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할 수 것을 제안한다.

3) 문교부 직제내에 학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실천력 있는 행정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4) 법적교사정원에 의한 자격있는 양호교사의 발령으로 바람직한 학교보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34호, 1987.
2. 국립보건 연구원: 학교보건 간호, 1977.
3. 김병호: 건강유지의 증진에 있어서의 학교보건의 역할, 학교보건, 11:9, 1982.
4. 김상욱: 학교보건 교육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학교보건학회지, 1988.
5. 김운서: 서울시내 양호교사의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제11권 제2호, 1974.
6. 김정근: 학교보건사업정책, 서울대 보건대학원 학교보건사업정책 세미나 보고서, 1989.
7. 김주성: 학교보건의 역사적 고찰, 학교보건 개론, 1974.
8. 김주성: 학교보건의 조직과 활동, 보건학 개론, 신평출판사, 1976.
9. 김화중: 양호교사 분포양상과 관련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10. 김화중: 학교보건과 간호, 수문사, 1984.
11. 문교부: 문교통계 연보, 1987.
12.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1980.
13. 문희자, 박신애, 강현숙, 고정은: 양호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14권, 1985.
14. 박신애, 문희자, 강현숙: 학교보건증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 제24권 제1호, 통권 129호, 1985.
15. 박영수: 학교보건의 개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 교원연수원, 양호교사 일반연수교재, 1988.
16. 박형종: 양호교사의 당면과제, 대한간호, 제12권 제1호, 1973.
17. 배정하: 부산과 경남지역에 있어서의 학교보건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1976.
18. 변주나: 전라남·북도 양호겸직교사에 관한 조사연구 I, 전북의대 부속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집, 1982.
19.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교육사, 1980.
20.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 건강관리 지침 1983.
21. 서울시 교육위원회: 학교보건, 1978.
22. 양경자: 양호교사의 학교보건 직무 만족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간호 제25권 제2호, 통권 135호 1986.
23. 유재순: 충북지역의 양호교사 미배치 국민학교의 학교보건 간호실태에 대한 조사, 청주전문대학 논문집, 10집, 1986.
24. 이경식, 김화중: 한국학교간호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 공중보건 잡지, 제9권 제1호.
25. 이선미: 미래 국민건강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대한간호, 제18권 제3호, 통권 101호, 1979.
26. 이선자 외 1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양호교사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조사, 보건학 논집, 제14권 2호, 1977.
27. 이수희: 학교보건교육론 교육출판사, 1986
28. 이수희: 학교보건 개선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 연구논문, 1987.
29. 차정순 외 1인: 양호직책 겸직교사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대한간호 제11권 5호, 1972.
30. 허정: 학교보건사업의 전망, 학교보건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국민보건 연구소, 1980.
31. 교육법, 법률 제2175호, 1970. 1. 1.
32.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5541호, 1971. 3. 2.

33. 학교보건법, 법률 제3006호, 1977. 7. 23.
34.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5956호, 1972. 2. 2.
35. 학교보건 관계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 문교부령 266호, 1974. 6. 21.
36. 경기도 교육위원회, 경기도 교육통계연보, 1987.
37.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교육통계연보, 1987.
38.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전라북도 교육통계연보, 1987.
39. American School Health Association: Don't keep school health a secret, Journal of school Health, Oct. 1978.
40. Dorothy S. Oda: A view point on school nursing, AJN. Vol. 81, No. 9, 1981.
41. Harlin V. K.: Role of other school health team member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June, 1977.
42. Rosner L. J.: Retter use of Health Professionals in New York city school, Public Health Reports, Vol. 82, No. 10, Oct. 1987.
43. Rustia J. : Rustia School Health Promotion Model,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Feb. 1982.

부 록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한민국의 학교보건업무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양호점적교사 여러분들의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활동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보건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빠짐없이 답해주셔서 학교보건향상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연구자의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자 이 정 임 올림

I. 귀하의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 | |
|--------|--------|--------|-------|
| 1. 성 별 | 1) 남 | 2) 여 | |
| 2. 연 령 | 만 | 세 | |
| 3. 종 교 |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 | 4) 유 교 | 5) 천도교 | 6) 없음 |
| | 7) 기 타 | () | |

4. 교육정도
 1) 전문대학
 2) 간호전문대학
 3) 교육대학
 4) 사범대학
 5)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
 6) 4년제 대학
5. 결혼상태
 1) 미 혼
 2) 기 혼
6. 교육경력
 1) 1년-2년미만
 2) 2년이상-5년미만
 3) 5년이상-10년미만
 4) 10년이상-15년미만
 5) 15년이상-20년미만
7. 양호검직교사 경력
 1) ~1년-미만
 2) 1년이상-2년미만
 3) 2년이상~3년미만
 4) 3년이상~4년미만
 5) 4년이상
8. 양호검직연수교육 참가횟수
 1) 없 다
 2) 있 다 ()회

9. 양호업무 담당의 겸하고 있는 타업무 내용

- | | |
|-------------|--------------|
| 1) 청소년 스카우트 | 2) 교육 기자재 업무 |
| 3) 도서업무 | 4) 학교저축업무 |
| 5) 서 무 | 6) 학교급식업무 |
| 7) 기 타 | |

B. 대상학교의 일반적 특성

1. 학교의 소재지
 1) 시
 2) 군
2. 운영형태
 1) 국 립
 2) 공 립
 3) 사 립
3. 근무처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중고등학교
4. 학생의 성별분류
 1) 남
 2) 여
 3) 남여공학
5. 대상학교 학생수 총 명 (남 명, 여 명)
6. 학급수 ()학급

- | | | | | |
|-------------------|---|--------|-----------|----|
| 7. 교직원수 | 총 | 명 (남 | 명, 여 | 명) |
| 8. 학교보건 예산액 | | 1) 안 다 | 예산액()만원 | |
| | | 2) 모른다 | | |
| 9. 학교보건조직 | | 1) 있 다 | 2) 없 다 | |
| 10. 양호실 설치 | | 1) 단 독 | 2) 서무과 겸용 | |
| | | 3) 기타 | () | |
| 11. 월평균 양호실 이용자 수 | | 명 | | |

C. 직업적 태도 및 근무여건

1. 귀하께서 양호겸직에 임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 2) 상사의 겸직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 3) 상의하달식 명령에 의해
2. 귀하께서는 학교보건에 관해 어느정도 흥미가 있으십니까?
 - 1) 매우 흥미있다.
 - 2) 흥미있다.
 - 3)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 4) 흥미없다.
 - 5) 전혀 흥미없다.
3. 귀하께서는 양호겸직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이다.
 - 5) 매우 불만이다.
4. 만일 양호겸직에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교보건에 대한 지식의 부족
 - 2) 학교보건에 대한 흥미의 결여
 - 3) 과도한 업무
 - 4) 학교보건 설비의 부족
 - 5) 동료교사들의 물이해
 - 6) 기타 (써 주십시오.)

5. 양호겸직업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양호실 관리
- 2) 보건교육
- 3) 간호제공
- 4) 건강관리(신체, 체격검사 실시)
- 5) 환경관리

6. 귀하께서는 학교보건에 관한 지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얻으십니까?

- 1) 매스콤
- 2) 학교보건관계 전문서적
- 3) 개인적 건강경험
- 4) 세미나 및 보수교육
- 5) 기타 (써 주십시오.)

7. 귀하께서는 학교보건업무를 위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 필요하다.
- 2) 필요하다.
- 3) 보통이다.
- 4) 필요없다.
- 5) 전혀 필요없다.

8. 귀하의 근무교의 교의 혹은 교치과의 있습니까?

- 1) 유
- 2) 무

-감사합니다.-